

산업재해감소대책

노동부
1992. 8.

목 차

I. 산업재해 현황.....	1
II. 재해원인 분석.....	2
1. 업종별	
2. 규모별	
3. 근속기간 및 관리적 원인별	
4. 직업병	
III. 제1차 산재예방 6개년계획의 주요내용....	4
IV. 평가.....	5
V. 대책.....	6
1. 사망등 중대재해 감소대책 수립시행	
2. 건설재해예방강화	
3. 범국민적 무재해운동 추진	
4. 50인미만 중소기업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	
5. 직업병예방 종합대책의 지속추진	
6. 산재예방 관련조직 확충	
VI. 행정사항.....	15

(단위 : 명, 억원)

구분/년도	'82	'85	'87	'89	'91
재 해 자	137,816	141,809	142,596	134,127	128,169
(재 해 율)	(3.98)	(3.16)	(2.66)	(2.01)	(1.62)
사 망 자	1,230	1,718	1,761	1,724	2,299
산재보상금	971	1,860	2,413	3,693	7,015

I. 산업재해 현황

- '80년대 들어와서 산업안전보건법제정등 예방체제의 구축과 정부주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노력에 힘입어 재해율은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 사망등 중대재해는 증가하고 있고 산재보상금 또한 대폭 증가

- '91년의 경우 128,169명의 재해자가 발생, 1일평균 재해자 427명, 사망자 8명, 신체장해자 100명 발생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은 4,624만일(1인당 평균 손실일수 361일)로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326만일의 14배에 달하고
 - 경제손실액도 3조 5천억원으로 이는 국민총생산액대비 1.7%에 달하여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의 2.8배임
- 재해율은 경쟁국인 동남아 공업국에 비하여도 아직도 2~4배 높은 수준이며 특히 강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
 - 재해율 : 일본0.53%('89), 싱가포르0.38%('89), 대만0.88%('89)
 - 강도율 : 한국2.34('91), 일본0.18('90), 싱가포르0.42('89), 대만0.62('88)
 - ※ 사망율(만인율) : 한국2.90('91), 일본0.59('90)
- 산업재해로 인한 기능인력과 경제적손실이 성장효과를 잠식하고 근로의욕 상실등 생산

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선진국 진입단계에 있는 국가 경제·사회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

II. 재해원인 분석('91)

1. 업종별

구분/년도	계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창고업	기타
재해자 (분포)	128,169 (100)	60,243 (47)	42,302 (33)	6,457 (5.04)	11,295 (8.81)	7,872 (6.15)
사망자 (분포)	2,299 (100)	614 (26.71)	801 (34.84)	359 (15.62)	320 (13.92)	205 (8.91)

○ 제조업을 비롯한 전업종의 재해가 지속적인 감소추세('82 : 3.66 → '91 : 1.69)이나 신도시 지하철등 건설물량 증대로 건설재해 및 사망자는 최근 증가추세

– 재해율(사망자) : $\frac{1.42\% (461명)}{'89} \rightarrow \frac{1.54\% (673명)}{'90} \rightarrow \frac{1.61\% (801명)}{'91}$

– 건설업의 재해가 전체재해의 33%이며, 사망재해도 35% (801명)에 달함

○ 광업은 채탄의 심부화, 석탄산업경기의 사양화로 인한 인력 부족 및 시설투자기피로 재해강도가 증가추세

(강도율 : $\frac{39.4}{'89} \rightarrow \frac{55.8}{'90} \rightarrow \frac{58.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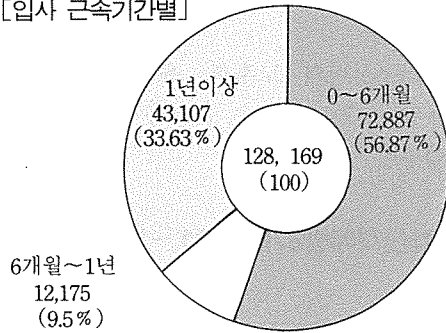
2. 규모별

구분 규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분포
계	7,922,704	128,169 (2,299)	1.62 (2.90)	100
50인미만	1,826,959	50,765 (760)	2.78 (4.16)	39.61 (33.06)
50-300미만	2,358,985	36,808 (704)	1.56 (2.98)	28.72 (30.62)
300인이상	3,736,760	40,596 (835)	1.09 (2.23)	31.67 (3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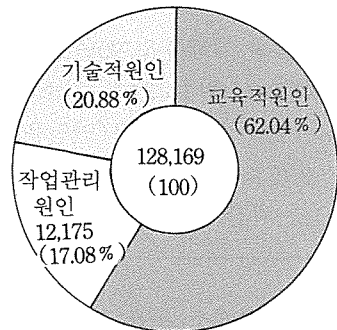
- 300인미만 중소기업의 재해가 전체재해의 68%이며, 특히 재정적으로 영세하고 안전보건조직이 없는 50인미만 업체에서 전체재해의 40% 차지하여 사각지대화
 - 사망재해도 중소기업이 전체사망재해의 64%이며, 50인미만업체가 33% 차지

3. 근속기간 및 재해원인별

[입사 근속기간별]



[재해원인별]



- 산업기능인력 부족에 따른 무자격·미숙련근로자의 취업증가로 근속기간 1년미만 재해가 전체 재해의 66.37%, 특히 6개월미만 재해가 57% 이고
 - 건설사망재해의 경우 근속기간 6월미만이 82.02% 차지
- 기술적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안전의식 고취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재해가 전체재해의 79.12% 차지
 -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교육 불충분 등 교

- 육적원인 재해가 전체재해의 62.04%
- 작업준비 불충분, 안전점검 미실시등 작업 관리재해가 전체재해의 17.08%

4. 직업병

구분	총계	진폐	난청	중금속	유기용제	기타
'89	1,556	1,259	169	57	25	46
'90	1,638	1,375	201	33	6	23
'91	1,537	1,228	178	61	60	10

- 진폐, 소음성 난청등이 직업병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 기계기구설비의 노후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 증대로 중금속, 유기용제등에 의한 직업병이 증가추세

Ⅲ. 제1차산재예방6개년('91~'96)계획의 주요내용

목 차

- 계획기간중 산업재해예방 행정을 대폭 강화하여
 - '96년도말 재해율을 '90년도1.7%에서 0.93%('90년대비 45.6% 감소)로,
 - '96년도말 사망재해율(만인율)을 '90년도 2.75%에서 1.50('90년대비 45.5% 감소)로 격감시킴

○ 년도별 재해율감소 목표

구분	'90 (기준)	'91	'92	'93	'94	'95	'96
재해율 (%)	1.71	1.49 (13)	1.33 (11)	1.20 (10)	1.09 (9)	1.00 (8)	0.93 (7)
사망자 재해율 (만인율)	2.75	2.58 (6)	2.38 (8)	2.14 (10)	1.90 (11)	1.70 (11)	1.50 (12)

* ()내는 전년대비 감소율

※ 재해감소목표 설정배경 : 일본의 4,5차 노동재해 방지 계획('73~'82)감소실적 감안, 일본의 10년 감소실적 →우리나라 6년감소('91~'96)

- 총투자액 : 4,431억원(산재예방기금에서 확보)
- ※ '90. 1 산안법 개정으로 산재예방기금설치 ('91 : 344억원, '92 : 507억원)
- 기대효과 : 재해자 195천명 감소, 산재보상금 2조 2천 260억원 절감
- 주요사업내용
 -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강화
 - 위험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재해다발사업장 집중관리
 - 작업환경관리 및 직업성질병예방
 - 재해예방 기술의 연구·개발체제 확립
 - 재해예방교육 및 안전보건의식 고취
 - 지도감독체제의 정비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 도모
 - 안전보건분야의 국제협력 추진

IV. 평가

- 제1차 산재예방 6개년계획에 기반을 두고 1년반 동안 추진해온 그간의 산업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실적을 중간평가해 보면
 - 재해감소 목표 및 사업내용이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따른 노동생활의 질에 대한 욕구점증등 국민적요구에 미흡하고
 - ※ 목표재해율('96 : 0.93%)은 일본의 '82년, 대만, 싱가포르의 '88년 수준에 불과
 - 재해율 감소위주 사업추진으로 강도높은 사망등 중대재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으며
 - 건설업의 경우 동계획 수립후 건설물량 급증등 상황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여 재해가 크게 증가하였고
 - 정부주도의 재해예방사업추진으로 노사 당사자 및 재해예방 민간단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재해감소의 정책효과가 반감 되었으며

- 50인이상 중소기업 위주의 예방대책시행으로 50인미만 영세업체의 재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책이 없었고
-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제도개선등 정부의 직업병 예방노력에 비해 노사의 직업병예방의식은 아직도 낮고 전문가,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며

■ 예방행정 조직과 범정부 차원에서의 협조체제 미비등 여건변화에 따른 현실성있는 정책대응의 미흡으로 사업추진성과가 기대에 못미침

V. 대책

목표수정

■ 제1차 산재예방 6개년계획에 의한 '96년 재해감소목표를 '94년도에 조기달성

- 목표재해율 : '96년 0.93% → '94년 0.90% (년평균 재해감소율 9.6% → 18%)

$\frac{1.62\%}{'91} \rightarrow \frac{1.30\%}{'92} \rightarrow \frac{1.04\%}{'93} \rightarrow \frac{0.90\%}{'94}$

- 목표사망재해율 : '96년 1.50 → '94년 1.50 (년평균 감소율 9.7% → 19.6%)

$\frac{2.90}{'91} \rightarrow \frac{2.43}{'92} \rightarrow \frac{2.04}{'93} \rightarrow \frac{1.50}{'94}$

※ 제1차 산재예방 6개년계획 수정·보완

■ 이러한 목표는 기수립된 제1차 산재예방 6개년계획 및 직업병예방 종합대책의 지속추진과 함께

- 사망등 중대재해 및 건설재해, 노사의 재해예방활동 참여, 재해사각지대인 영세사업장, 직업병등 취약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행정조직의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임

1. 사망등 중대재해 감소대책 수립시행

가. 사망재해 감소목표 관리

- 지역별·사업장별 전담직원 지정책임제 실시
 - 매분기별 발생현황을 파악 대책강구
-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로 광업 및 교통재해등 관계부처별 감소대책 추진
 - 소관부서별 자체감소계획 이행 독려

나. 중대재해예방활동 강화

- 사후조치 위주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 재해조사표 폐지, 요양신청서 보완활용으로 행정력 집중 투입
- 중대재해발생원인 조사, 동종재해재발 방지

다. 사망등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조치강화

-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확행
- 중대재해 발생사업주 구속원칙 시행등 사법조치 강화
 - 대검 환경전담부서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담토록 협의
- 재해발생시 법인의 경우 사업주 처벌이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

2. 건설재해예방강화

■ 건설업은 제조업과 다른 특수성(공사진전에 따른 위험요인의 수시변화, 하도급 형태, 일용근로자 사용등)이 있으므로

-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 재해다발 영세 건설현장 위주의 집중적인 지도와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

가. 건설현장 규모별 예방대책 시행

- 대규모 건설현장(30억이상) 집중 점검
 - 건설성수기, 해빙기, 장마철전에 공단기술지도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등 관련전문기관과 합동실시(1,000개소)

- 건설현장 지역별 전담지도체제 확립
 - 지방노동관서, 공단, 재해예방단체 가용인력 총동원
 - 대상 : APT등 건축공사, 지하철, 플랜트, 교량공사현장등('92 : 3,000개소, '93 : 4,000개소)
 - ※ 도로, 토지정리, 준설, 포장·조정공사 제외
- 방법
 - 추락, 전도, 충돌, 낙하, 협착, 무리한 동작등 6종의 재해사례 및 예방기법에 대한 사전 교육(공단건설안전부 및 산업안전교육원)
 - ※ 재해발생 14종형태중 추락등 6종형태 재해가 80.24%
 - 착공시부터 준공까지 2주 1회이상 출장 위험요인에 대한 지도 및 경고스티커부착
 - 시정이 안되는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

나. 관련제도개선

- 공사진척도에 따른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제정(고시개정)
- 노사의 안전의식고취를 위한 산재보험제도개선 검토(노동보험국과 협의)
 -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에 건설업포함
 - ※ 건설재해보험급여('91) 3,578억원, 전체 보험급여의 36.58%
- 설계서상의 시공기간 준수 의무화(법개정)
 -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재해발생 방지
 - 각종 정부발주공사 계약시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토록 협조 요청
- 원·하도급 업체간 안전보건상 조치 공동책임제 도입(법개정)
- 재해다발 건설업체 정부발주공사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제도 도입(건설업법, 예산회계법 관련규정 개정 협의)

- 우수시공업체 평가시 안전시공평가비중 상향 조정 및 정부공사입찰 우선권 부여(건설부와 협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안전시공평가비중 : 현 5%→10%)

3. 범국민적 무재해운동 추진

- 무재해운동은 인간존중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재해없는 밝고 활기찬, 신바람나는 직장풍토를 조성하여 노사협조와 생산성향상으로 산업평화를 정착하는 운동으로써
 -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현실을 감안하고 교육적, 작업관리적 원인에 의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임
-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원참가”, “전원실시”원칙과
 - 새생활, 새질서운동 및 생산성향상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여 민간주도에 의한 재해예방활동으로 정착

나. 무재해운동 내용

- 작업전 무재해 3대실천운동(“작업전 안전점검”, “정리정돈”, “보호구의 착용”)의 전개
- 위험예지훈련실시
 - ※ 위험예지훈련이란 당해작업에 있어서 근로자 자신이 스스로 잠재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훈련임
- 위험표지 부착운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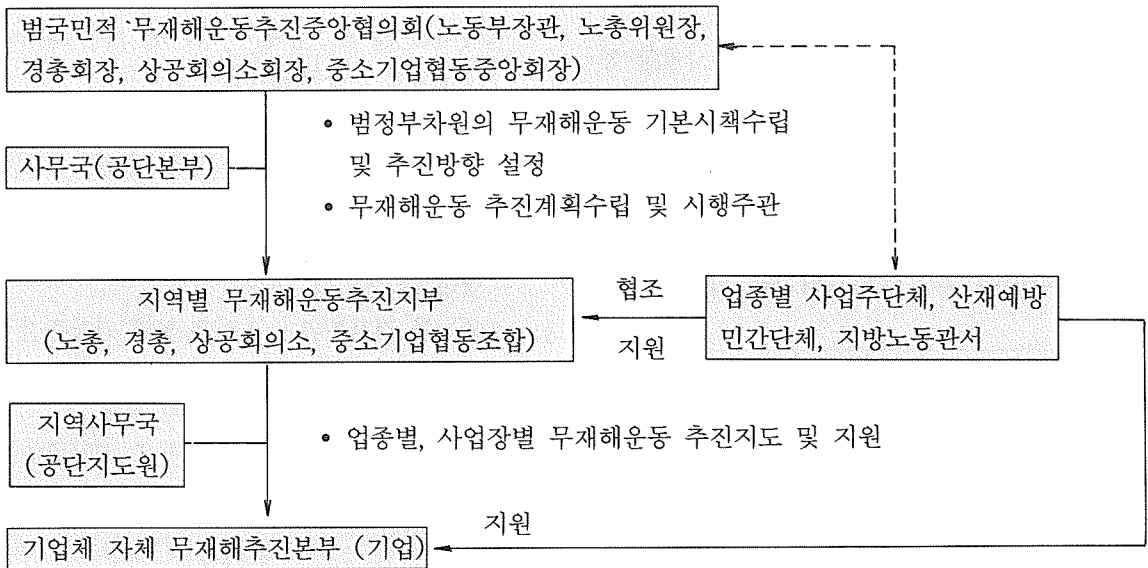
다. 추진방법

- 전사업장 무재해운동 참여유도 확대
 - '92. 7 현재 참여업체 25,925개소(51%)
 - 대상사업장 50,925개소(10인이상 전사업장)
 - ※ 단계별 점진적 확산 : '92 : 6천개소, '93년 : 1만9천개소
 - 중소·영세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반

- 월공단등 사업장 밀집지역 입주업체 우선 선정 시행
- 노총, 경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사업주단체) 무재해운동 세미나를 통한 참여 권유
- 무재해운동추진 핵심요원에 대한 추진기법교육 실시(공단, 협회)후 운동전개
 - 단위노조 조합장(7,634개소)등 전임자, 직·조반장, 관리감독자를 무재해운동추진요원화
- ※ '88년이후 산업안전공단 무재해추진요원 교육이수자(4,936명)와 사내강사 교

- 육이수자(395명)도 핵심요원으로 활용
 -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점검체제 구축
- 무재해운동 참여·독려반 편성·운영
 - 본부 각과 사무관, 공단·협회 부장급 지도요원으로 10개반 편성
 - 9월중 무재해기법 교육 이수후 전국 주요 도시 순회 전파교육
 - 운동참여 사업장의 무재해 목표달성 독려지도
- ※ '92. 6 현재 무재해목표달성 사업장 5,099개

가. 무재해운동 추진체계 정립



라. 운동추진에 대한 메리트제 도입

- 무재해운동추진사업장의 실적에 따라 근로감독면제
 - 무재해운동목표 1배이상 달성시: 일체의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면제
 - 전년대비 50% 이상 재해감소시: 정기감독 면제
 - 무재해운동 신규 참여업체 '92년 정기감독

보류검토

- 무재해 달성결과에 따른 비용감소분을 포상금등으로 근로자에게 성과지급
- 무재해교육이수자의 산안법상 법정직무교육(보수) 면제 및 무재해운동 실시사업장(위험예지훈련)의 사내안전보건교육 면제
- 무재해달성 사업장에 대한 정부포상제도 정착

-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를 총리주관행사로 격상(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안전보건관리대상 제정등 재해감소우수업체 정부포상 확대
 - 재해예방활동을 계량화하여 우수안전보건활동업체를·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 수여
-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상회업체 각종 정부포상시 제외

마. 홍보

- 신문·TV등 홍보매체를 통한 운동참가유도 : 기획특집 및 공익광고제작, 게재·방영
- 무재해운동 소개책자(5만부), 팸플렛·표어·포스타(각10만부), VTR등 교재(5편) 제작·배포
- 재해예방 우수업체 및 무재해달성 사업장 성공사례 발굴·전파
- 업종별, 지역별 무재해운동 시범사업장 지정·운영

4. 50인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50인미만 중소기업은 안전보건조직등 자체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할 수 있으나
- 50인미만 영세사업장은 유해·위험작업 공정의 하도급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함에도
 - 안전보건시설 투자여력부족등으로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미약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특별지원이 필요함

- 재해예방활동 국고지원사업 실시
 - 산재예방 관련단체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를 지도토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산재예방기금에서 부담
 - 지원내용('93예산안 요구중)
 - 안전관리대행 : 5,000개소(근로자수

100,000명), 15억원

※ 근로자 1인당 월 1,256원('92 기준)

- 보건관리대행 : 1,500개소(근로자수 30,000), 3억6천만원

※ 근로자1인당 월 1,000원('92 기준)

- 작업환경측정지원 : 1,500개소, 년1회 2억 3천만원

- 특수건강진단지원 : 유해부서 종사근로자 7,500명, 년1회, 1억1천만원

- 사업시행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협회, 산업보건협회, 안전관리대행협회,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등

- 재해예방시설유자자금 집중지원

- 용자재원확대 : $\frac{200\text{억원}}{92} \rightarrow \frac{420\text{억원}}{93} \rightarrow \frac{500\text{억원}}{94}$

- 용자대상확대 : 유해, 위험기계, 기구 대체 경우외에 신규구입인정

5. 직업병예방 종합대책의 지속 추진

- 근로자 건강관리체제 확립

- 보건관리자의 기능을 보강하여 현장의 직업병예방조치의 강구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유도

- 건강진단의 내실화 및 사후조치 확행

- 건강진단제도의 지속적 개선 및 정착지도
- 불량의료기관 일제정비 및 건강진단 실태 확인점검

- 검진결과에 따른 작업전환 등 사후조치 철저

- 작업환경개선

- 제조업체 작업환경 센서스 실시('93)

- 측정시 근로자 참여, 정도관리 시행으로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작업환경 불량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시까지 작업중지, 사업주입건등 강력조치

- 전문연구기관 및 인력의 양성확대

- 산업보건연구원 기능 활성화(직업병예방 기술 연구 및 판정업무 담당)
- 연구용역사업 및 연구장비 구입자금 지원 확대실시
- 주요대학에 산업의학연구소 설치(전국8개국립대)
- 산업의학 및 산업간호등 직업병예방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건설재해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사망등 증대재해감소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건설안전과)

※ 금년에는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하고 '93년중 직제개편

○ 지방

- 근로감독원 증원 : 90명(현 1인당 557개사업장 담당→300개사업장 담당수준)

○ 공단 무재해추진 조직 보강

6. 산재예방 관련조직 확충

○ 본부

VI. 행정사항

1. 소요예산 확보

(단위 : 백만원)

사업 / 년도	계	'92	'93	비 고
계	5,108	672	4,436	
○ 건설현장전담책임제 실시	605	340	265	여비, 인쇄비
○ 무재해운동 전개	1,020	332	688	숙박비, 임차료, 세미나 비용
○ 영세사업장 재해예방 활동지원	2,205	-	2,205	민간단체국고보조
○ 직업병대책 추진강화	1,278	-	1,278	

※ '92년도는 기획보된 산업안전활성화 사업비 활용, '93년 산재예방기금에 편성

2. 향후 추진 일정

- 노·사·정 조찬간담회 92. 8월
- 무재해추진운동 중앙협의회 구성 '92. 8월
-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회 개최 '92. 8월
- 대책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92. 8월

- 관계부처·기관 협의 '92. 8월 ~10월
- 산안법관련 규정 개정 추진 '92. 10월 ~'93. 1월
- 대책 내용 홍보 '92. 9월

